

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

의안 번호	324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2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위탁사무명: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- 「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)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7조(의회 동의 등), 제13조(재계약), 제21조(성과평가)

○ 추진 필요성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, 「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,
이에 따라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

3. 위탁사무 내용

○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

-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
-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유지관리
- 청소년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- 그 밖에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4. 위탁시설 개요

○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

명칭	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
위치	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 181(감일공공복합청사 3층)
개관일	2024. 3. 11.
시설규모	연면적 932.09㎡
수용인원	170명
이용대상	만 9세 ~ 24세(전연령 이용 가능)
운영시간	월, 토 09~18시 / 화~금 09~20시 ※ 일요일 휴관
운영인력	총 7명(관장 1, 팀장 2, 직원 4)
주요시설	댄스실 2, 활동실 2, 아지트 1, 방송실 1, 창고 1
청소년 이용인원	54,649명(2024년) / 59,695명(2025년)

5. 민간위탁기간: 2023. 9. 1. ~ 2026. 8. 31.(3년)

○ 「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 제2항

6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기존 수탁기관인 (사)인터넷꿈희망터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실시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6년 예산액	산출근거
계	649,238천원	전액시비
하남시감일청소년 문화의집 운영	649,238천원	- 인 건 비: 344,310천원 - 물 건 비: 57,945천원 - 경상이전: 63,003천원 - 사 업 비: 183,980천원
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은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 제3호의 ‘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’에 해당 ※ 청소년 사업
-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운영의 능률성 극대화과 전문성 확보, 사업 연속성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우선 검토 필요

9. 성과평가 결과
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21조에 의거 성과평가 실시
- 청소년지원팀장, 담당자 2인 성과평가 결과 최종점수 95.12점
-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됨

10. 향후 추진계획

- 2026. 4월: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
- 2026. 5월: 재계약 체결

11. 관련 법령 및 조례: 붙임1

관련 법령 및 조례

1 청소년기본법

제4장 청소년시설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2 청소년활동 진흥법

제3장 청소년활동시설

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국가는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3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4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·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③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,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“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 1. 21.]

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3장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

제6조(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) ①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을 청소년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기술수준
2.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
3. 책임능력·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
4.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·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 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<다른조례의 개정 2023.5.1.>

4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제2장 위탁 대상사무 선정

제7조(의회 동의 등)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3.5.1.>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신설 2023.5.1.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<개정 2023.5.1.>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위탁기간<개정 2023.5.1.>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<개정 2023.5.1.>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결과
10.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<2023.5.1.>

제13조(재계약)<개정 2023.5.1.>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 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장 관리 운영

제21조(성과평가) 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1.12., 2023.5.1.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·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.<신설 2021.1.12., 개정 2023.5.1.>